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907

발의연월일 : 2026. 7. 10.

발 의 자 : 이성윤・윤준병・박균택
서영석・서삼석・강준현
朴芝源・정혜경・용혜인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현행법은 소년사건을 처리하는 준거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1958년 제정 이래 소년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나 예방・재범방지 등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이에 목적과 기본원칙을 보완하고 소년사건의 절차적 기본권과 피해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근거를 도입하는 등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년사법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을 넘어, 현행법의 근본 취지를 재정립하고 소년비행・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계기로 이어지는 동시에 소년사건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 등으로 나아

감으로써 근본적이고도 실효적인 제도개선을 도출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법률 제 호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하여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 및 사회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소년 및 보호자)”를 “(정의 및 기본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년에 대한 재판은 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하고, 소년의 연령과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④ 국가는 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년의 낙인을 방지하고 사회적 통합과 회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

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심리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제5조의2부터 제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보호자와 연락)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3(범죄의 원인과 환경 조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소년의 성격·태도·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와 그 밖의 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및 검사는 제1항의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신문하는 경우, 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의5(진술조력인의 수사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소년을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소년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6(수사절차상 국선변호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소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소년의 연령,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절차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제17조의2제1항 중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를 “법원은 다음의 경우 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2.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3.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제2항 단서 중 “적당하다고”를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 등 적당하다고”로 한다.

제2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피해자나”를 “심리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소년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이 소년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심리개시 여부, 심리 결과, 집행의 종료 등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소년부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그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재판에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재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제1항제7호 중 “위탁”을 “통원치료 또는 치료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10호”를 “제1항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2조에”를 “제18조의 임시조치, 제32조에”로 한다.

제3장의2에 제67조의3 및 제67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3(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비행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소년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소년비행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7조의4(통계의 수집·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처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년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 기관에게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통하여 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회복 및 사회 통합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생 략)	제2조(정의 및 기본원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소년에 대한 재판은 소년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진행되어야 하고, 소년의 연령과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보호를 우선으로 하며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신 설>	④ 국가는 소년의 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과 계획을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소년의 낙인을 방지하고 사회적 통합과 회복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삭 제>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경찰서장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지 않는 경우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상담 및 교육 2. 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심리치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보호자와 연락)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출석요구나 조사를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소년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사람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하는 것이 소년의 복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조의3(범죄의 원인과 환경 조

		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범죄의 원인 및 동기와 소년의 성격·태도·경력·교육정도·가정상황·교우관계와 그 밖의 환경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및 검사는 제1항의 조사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소년 및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5조의4(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신문하는 경우, 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년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5(진술조력인의 수사 참여)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절차에서의 조력과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

		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소년을 조사하기 전에 소년,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진술조력인은 조사 전에 소년을 면담하여 진술조력인 조력 필요성에 관하여 평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에 참여한 진술조력인은 소년의 의사소통이나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진술조력인의 수사 절차 참여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

	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6(수사절차상 국선변호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년을 신문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소년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소년의 연령, 발달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수사절차를 이해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법원은 다음의 경우 변호사----------. 1.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신 설>	2.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신 설>	3.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

	우
<신 설>	4.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생 략)	제24조(심리의 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	② ----------. ----------소년의 건전

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한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 등 적당하다고 ---.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 “대리인등”이라 한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① ---------- ---------- ---------- ---------- ---------- 심리절차가 현저히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나-------. <단서 삭제>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삭 제>
2.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삭 제>
<신 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소년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

	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이 소년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년을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저해되지 않는 한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 심리개시 여부, 심리 결과, 집행의 종료 등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생 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 또는 등사를 소년부 판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 설>	③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등의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열람 또는 등사 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그 열람 또는 등사로 알게 된 사항을 재판에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재판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7. ----------

위탁	통원치료 또는 치료 위탁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0호----------. ⑤·⑥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제43조(항고)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제43조(항고) ① 제18조의 임시조치, 제32조에----------. 1.·2. (현행과 같음)
1.·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제67조의3(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무부장관은 소년비행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소년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소년비행예방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67조의4(통계의 수집·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처분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4조제1항 각 호의 소년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하고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에 대한 통계를 수집

	하기 위하여 경찰, 검찰, 법원 등 관계 기관에게 통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